

## 정관 개정 2002와 2004

Revisions of Articles in 2002 and 2004

### 뉘뚜리를 늘어놓는 특별한 이유

제작년 필자는 본지 5월호 칼럼 원고 청탁을 받고 송고했으나 일언반구 통보나 양해 없이 게재되지 않는 수모를 당하였다. 편찬위원장 및 禹 회장을 면담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뿐이었다.

그들은 첫째 예의를 저버렸다. 회원이 투고한 원고라도 게재치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들어 문서나 구두로 양해를 구해야하는데 더구나 스스로 원고청탁을 하고도 통보가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편찬위원장은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게재 여부는 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혼자서 회장과 논의, '시도회장들의 오해가 우려되어 유보' 하였단다.

문제의 칼럼내용은 당시 개정 작업 중인 정관에 경영마인드의 도입,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연장과 자립, 복지협회 구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담은 것으로 하나라도 반영되면 더 없는 영광이라 생각한 것이다.〈별첨 참조〉

며칠 후 필자는 서울시회 간사회 말미에 위 사실을 언급하고 언론의 독단과 전횡을 성토했던 후 서울건축사신문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모두들 공분하고 이철호 회장도 게재를 약속했으나 또 다시 불발되었다. 회원의 원고는 공익에 피해가 없는 한 게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한 것이다. 필자는 서울시 건축사회 감사가 서울건축사신문에서 거부당한 수치와 자존심을 버리고 부산건축사신문에 독자투고를 하였다.

당시 정관개정의 핫이슈는 연합제로서 시도회장의 자동이사제였다. 이는 서울의 경우는 반대 입장이고 지방의 경우는 찬성입장일 것이 정한 이치이다. 그런데 필자는 위의 사항이 아직은 긍정적 요소보다 부정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그렇다면 부산, 울산, 경남의 3개 시도를 아우르는 부산건축사신문은 오히려 본고를 게재하지 말아야 했으며 서울의 경우는 게재해야 마땅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부산건축사신문은 '이 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다'고 첨부하여 게재해 주었다.

## 2002 정관 개정 실패의 교훈

필자가 사담(私談)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한풀이도 아니요, 관련된 분들을 매도하고 싶어서도 아니다. 세월도 두 해나 지났고 이순(耳順)이 가까운 나이이니 이제 그런 것들은 잊은 지 오래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인가?

우리 회원은 사무소의 소재지나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이해가 상충되고 있다. 회장은 이러한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분출케 하고 옹광로에서 정제된 쇠물을 빼내듯 최대공약수의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언론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그들은 '오해 소지'(실은 오해 소지도 없다) 때문에 언론을 통제할 것이다. 첫째와 둘째는 개인의 문제일 수 있으나 지금 거론하는 언론의 자유는 전 회원의 권익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정관개정 같은 주요사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우기 위함이다.

2002의 개정안은 수개월에 걸쳐 해당위원들의 노고가 있었다. 그러나 어떤 사정인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회원의 의견을 청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청한 원고조차 게재하지 않았으며, 서울 또한 담당임원이 해당위원회에 계속 불참하였고, 진행과정이나 초안을 읽지도 못하며 언론도 봉쇄하는 회한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추론하는 것은 각자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서울 대의원 간담회의 토론 결과는 집행부와 반대였다.

결과적으로 2002는 부결되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는 개정작업 중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통제할 집행부의 아집이 빚어낸 결과이다. 16개 시도회장이 자동이사 가 되면 이사회에서 지방의 고충과 요구를 직접 상정하고 해결을 할 수 있어 좋다고 할 수 있으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시도지사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견결을 갖는 것과 같은 일이다. 물론 우리 협회에 특별한 현안이 없고 연합회제도가 된다면 궁극적으로 그리될 수 있으나 아직은 아닌 것이다. 만약 이 문제를 처음부터 언론을 통하여 회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면 현행 개정안처럼 5명 이사(理事) 정도의 안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되어 통과되었으면 또 다시 개정작업에 힘을 소비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리더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협회를 힘들게 한 것이다.

## 2004 개정안 이렇게 의결하자

2004 개정안의 경우 2002와 달리 온라인상에서 회원의 의견을 구한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짧은 아쉬움이 있다. 회원 20명 중 19명은 의결권이 없는 만큼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하는데, 기간중 의견제시가 단 1건에 불과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직접선거와 대의원수 조정 그리고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40명당 1인에 대하여는 행정편이라는 회원의 목소리가 뚝뚝이 활발한 의견들이 개진되리라 보며, 직접선거는 전자투표 등 돈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시의 적절한 개정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회장임기 문제만 남는다.

회장임기가 2년이다 보니 취임하여 협회 파악하는데 1년 지나고, 다음해는 퇴임연도이니 소신껏 일할 기간이 모자란다는 것이 개정의 이유라 본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회장중심의 협회운영을 기본체제로 할 경우이다.

필자는 2002 칼럼에서 경영마인드 등의 도입을 제창하였다. 경영인을 상근부회장이나 사무처장으로 영입하여 흑자경영을 체질화하고 회장은 정책적인 결정과 대외활동 등 명예 쪽에 비중을 두자는 안이었다. 물론 이것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 모두가 전문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숨겨진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만 아날로그적 사고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건축사로서 경영에 대한 한계와 급여도 없이 상근하다시피 하는 현실은 기존의 3년제를 하는 타단체와 다른 것이다. 또한 부회장이 자동회장이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2년 공부하고 2년 실행하는 제도를 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2년이나, 3년이나 하는 것은 단순히 1년의 연장문제가 아니고 협회의 시스템을 전문경영인체제로 하느냐 아니면 회장 중심체제로 하느냐 결정할 후 논의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

3년이나, 2년이나 하는 것은 대의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이 될 것이며, 결정된 이상 충실히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중대문제는 적어도 수개월 난상토론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회원 전체의 공감대 위에서 상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정관개정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에 와 있다. 그간 개정안 논의 과정을 보면 대부분 'All or Nothing' 이었다. 반드시 개정해야 하고 모두가 동의하는데도 한 두 조항 때문에 모든 것이 부결되는 사태가 그것이다. 이는 협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미련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축조심의를 하여 합의한 조항만은 개정을 하도록 하자. 대의원 모두 정연한 논리에 의한 토론을 하자. 활발한 토론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정관을 만들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 두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무(無)로 돌리는 우(愚)를 범하지 말자. ㄷ

〈별첨〉

##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 - 협회정관 개정작업에 부쳐

\* 본 칼럼은 2002년 5월호 본지 칼럼에 게재청탁을 받은 원고로서 정관개정 2002와 2004의 이해를 돕고자 게재한다. (필자주)

지난번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정관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정관은 1965년 제정된 이래 작년까지 36년간 30회의 개정을 거듭하여 왔다. 거의 매년 개정을 한 셈이다. 급변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필요하면 당연히 정관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그간의 개정은 국부적인 개정이 대부분이었다. 새 천년 들어 개정된 현 정관도 매 한가지다. 이제 새로이 개정을 한다면 거시적인 시야에서 보다 앞날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정관, 기업의 경영 개념이 들어있는 정관이 제정되었으면 한다.

금번 정관의 주목적은 연합회 제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시도건축사회가 각기 독립하여 존재하며 대한건축사협회는 연합회의 협의기구로 존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연합회제도는 이미 10년 이상 위원회에서 연구되어 왔다. 또한 그 중간 결과로서 지부와 지부장의 명칭이 시도건축사회와 시도회장으로 바뀐 것은 물론 시도 건축사회에 대한 조항이 전체 정관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현 상태는 준연합회제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치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연합회 제도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지방자치제 시행이 정착되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과 더불어 본 협회가 제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따른 반발이 원인(遠因)이라면 개업건축사의 협회가입 자유화에 따른 각시도 복지회의 기금, 특히 부동산의 처리 문제 등이 근인(近因)인 것으로 사료된다.

연합회제도로 갈 경우 어떤 정관이 될지 모르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본부 기능이 약화되고 대신 본부회비도 없어지리라 본다. 시도회는 나름대로 특색있는 회가 되겠지만 서울, 부산이나 경기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시도건축사회는 회원 당 회비 부담률이 많아 본래의 취지에 맞는 건축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우리라 사료된다. 어찌되었든 이 문제는 정관개정특위에서 대국적 관점에서 현명하게 처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금번 개정이 이러한 근인을 해결하는 데만 국한하지 말고 차체에 앞날을 보고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그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협회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으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

그간 우리회는 건축사법에 의거 안주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복수협회의 길을 열어 놓은 현실과 회원(주주)의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서 안주할 수는 없다. 적자나는 기업은 도태하듯이 협회도 자립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길 수 없기 때문이다.

협회는 그 동안 수년에 걸쳐 수익사업 위원회를 가동하여 왔고, 그 사이 많은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회장이 바뀔 때마다 사장되고 다시 시작하는 악순환만 되풀이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빛을 볼 수 있으면 충분히 자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 중 하나를 제시한다면 입회금의 활용이다. 현재 입회적립금은 300여 억 원 정도로 알고 있으며, 이를 가장 안전한 은행의 정기적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안의 이자수입 ; 원금의 4%정도) 이를 유능한 경영인을 영입하여 운용할 경우 6~7%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이럴 경우 차익은 6~8억여원에 달한다. 경영자의 인건비로 1억원을 지불한다해도 5~7억원이 남는다. 현재 회원은 8,000여명이며 60% 미만만이 회비를 내고 있다. 1년의 회비 수입이 당해연도만으로 볼 때 6억원이 안 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위의 숫자를 가감해 보면 입회금의 운용만으로도 충분히 회비 없는 건축사회를 만들 수 있음은 물론 그 이상의 흑자도 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회관의 재개발 등에 투자하여도 그 이상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위에 열거한 자립협회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업무 영역의 분장과 전문화를 위한 정관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협회는 회장이 바뀌면 전회장이 추진하던 일들이 단절 내지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자주 보아왔다. 즉 회장의 의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온 것이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고 자립과 복지의 구현을 위해 경영과 재정 그리고 행정과 정책연구의 두 축으로 나누어 협회를 운용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은 두 명의 상근부회장을 두어 각기 업무를 분장하는 방법이며, 다른 방법은 경영을 위에 두어 상근부회장으로 하고 사무처장이 일반 사무와 장기적인 정책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영향력 있는 외부인사나 회원으로 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회장과 사무처장의 위치를 반대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단지 어떤 경우이든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등 책임 경영에 따른 상벌을 엄격히 하고 직원들을 적성에 맞게 전문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장은 이사회와 더불어 업무를 감독하고 정책의 잘잘못을 평가하며, 그들이 제시하는 것들에 대하여 시행여부나 가치판단 우선순위 배정 등을 확정하는 등 의결기구화 하면 될 것이다.

둘째,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 문제이다.

각 위원회는 당연직을 뺀 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여 매년 1명씩을 교체함으로써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각 위원회는 임기가 1년으로, 특히 회장이 바뀔 때마다 모두 바뀔으로써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함으로써 그간의 결과가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전문성의 깊이도 축적하지 못하였다. 이제 이렇게 정관을 바꿈으로써 한 위원회에 최소한 5년간 소속됨으로써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인재를 매년 배출할 수 있으며, 이들 중 우수한 회원이 이사직을 맡음으로써 보다 완벽한 협회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위원회가 인재 풀이 됨으로써 인물 기근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위원을 공모하여 위촉하는 방안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회의 회원수는 7,000여명이다. 그런데 비입회자로서 개업한 건축사는 1,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원의 10%가 넘는 셈이다. 이 숫자는 건축사법에 정해진 다른 협회를 만들 수 있는 숫자이다. 또한 서울이나 부산, 경기도회 등은 맨 파워만으로 볼 때 당장 회원 투표를 하여 독립 건축사협회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본협회의 환골 탈퇴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에 당면하고 있다. 제조자의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법으로 우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각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실험이나 복지회 등을 발전적으로 해체(병행도 가능)하고 본 협회 차원의 실험과 공제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회원은 이를 통해 업무상 안전막과 노후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비회원의 차별화를 위해 대한건축사마크를 사용하는 사무소는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여 자연스럽게 비등록회원을 흡수해야 할 것이다.

협회가 흑자를 내서 회비도 안 받고, 설게 실수가 있어도 공제회 등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역량대로 협회에 봉사할 수 있고, 우리의 업무영역 확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장단기 계획들을 연구하고 실행할 때 그 누가 회원자격이 있으면서 입회를 안 할 것이며, 그 어느 시도의 건축사회가 연합회를 부르짖을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현재의 본협회 규모는 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연합회로는 건축사법 개정, 회원 대비 조직의 비대화 및 이로 인한 비효율성 등 어려운 요소가 많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연합회제도로의 정관개정을 유보하고(물론 현안문제는 슬기롭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위에 언급한 경영개념의 도입 등을 위주로 하는 정관개정을 부탁하고 싶다. 또한 정관 개정작업은 우리 건축사뿐 아니라 경영인과 컨설팅회사의 자문 내지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며 내친김에 경영진단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건축시장의 개방, 건축사의 대량 배출, 신고 면적의 확대, 개발도상국의 마감과 1만불 시대의 도래에 따른 자연스런 업무량의 감소 등 우리에게 겹 넘어야 할 산이 중첩돼 있다.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자립과 권익 그리고 복지협회를 이루기 위하여 이제 모두 힘을 합하여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현 집행부는 차기 집행부가 새로운 방향에서 일할 터전을 마련해 줘야한다. 2년은 너무 짧기 때문이다. ㉮